

# 電子工業登錄案内

本会は 商工部令 제659호(82. 3. 11.)  
에 의거하여 電子工業登錄을 받고 있다.  
業体の 業務에 착오가 없도록 해당되는  
전자공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소개한다.  
(편집자 註)

## 〈전자공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〉

제정상공부령	제245호(69. 4. 28)
개정 "	제441호(75. 6. 25)
개정 "	제496호(76. 11. 6)
개정 "	제604호(80. 7. 26)
개정 "	제659호(82. 3. 11)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전자공업진흥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과 동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전자공업의 등록) ①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공업진흥회(이하 "진흥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2. 회사의 연혁서(별지 제 2 호서식)
3. 생산시설 현황(별지 제 3 호서식)
4. 생산 및 판매현황(별지 제 4 호서식)
5. 투자 및 자금조달현황(별지 제 5 호서식)
6. 외자도입 현황(별지 제 6 호서식)
7. 기술도입현황(별지 제 7 호서식)
8. 연구개발현황(별지 제 8 호서식)

②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의 장(이하 "진흥회장"이라 한다)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자공업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, 신청인에게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진흥회장은 사업자별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)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10 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흥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등록증의 갱신) 사업자는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3 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등록의 취소요청등) ① 진흥회장은 사업자가 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10 일 이내에 상공부 장관에게 전자공업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상공부장관은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진흥회장 및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전자공업진흥기금의 운용관리상황 보고 등) ① 영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용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전자공업진흥기금운용상황보고서를 매 4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한

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업진흥기금사업진도 보고서를 매 4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보조금의 지급) 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영 제 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6조제 4항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영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액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자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사용한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 8 조 (국산화촉진전자기기의 세부품목) 영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촉진전자기기등의

세부품목은 별표와 같다.

제 9 조 (전자공업통계조사표 제출) ① 사업자는 매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업통계조사표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진흥회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업통계조사표를 매 4분기별로 총괄하여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자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전자공업등록증의 갱신을 하여야 한다.

대상 및 범위	세 부 품 목
영상기기 및 장치	① 녹화 및 재생장치 ② TV모니터 ③ 비디오 카메라
음성기기 및 장치	① 음향기록 및 재생장치 ② 음향전자기기
통신기계, 기구 및 장치	① 전화교환기 ② 반송장치 ③ 광통신장치 ④ 데이터통신장치 ⑤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 ⑥ 인쇄전신장치 ⑦ 사형전화장치 ⑧ 선로유도자동저감장치 ⑨ 선로집선장치 ⑩ 무선송수신기 ⑪ 무선송수신기 ⑫ 마이크로웨이버통신장치 ⑬ Paging통신장치 ⑭ 방송 및 방송중계장치 ⑮ 콘버터 ⑯ 인버터 ⑰ 태양광발전장치
무선응용기기 및 장치	① 방향탐지장치 ② 레이더 및 항행전자보조장치 ③ 원격조정장치
전자응용기기 및 장치	① 전자계산조직(단말, 주변 및 관련기기와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) ② 전자복사기 ③ 금전등록기 ④ 회계기 ⑤ 신호 및 신호제어장치 ⑥ 경보장치 ⑦ 의료용 전자장치 ⑧ 초음파응용기기 ⑨ 금속탐지기 ⑩ 고주파 응용기기
전자계측기기 및 장치	① 전자계측기기

[별지 제 2 호 서식]

### 회 사 의 연 혁 서

① 연 월 일	② 주 요 연 혁 내 용	③ 비 고



[별지 제 3 호 서식]

생 산 시 설 현 황

① 생 산 시 설 명	② 단 위	③ 수 량	④ 단 가 (천 불)	⑤ 구 입 국	⑥ 구 입 년 도	⑦ 내 용 년 수

2710 - 5 A(1)  
1982. 2. 8.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54g / m<sup>2</sup>)

[별지 제 4 호 서식]

생 산 및 판 매 현 황

① 품 목	② 규 격	연 간 생 산 능 력			판매현황(실적 또는 계획)			
		③ 단 위	④ 수 량	⑤ 금액 (천불)	⑥ 수 출 (%)	⑦ 로 칼 (%)	⑧ 내 수 (%)	⑨ 기 타 (%)
합 계								

2710 - 4 A(1)  
1982. 2. 8.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54g / m<sup>2</sup>)

[별지 제 6 호 서식]

외 자 도 입 현 황

(단위:천불)

① 도 입 년 월 일 (향후 3 년간예정포함)	②도입내용	③ 금 액	④ 도 입 선	⑤ 도 입 조 건

2710-17A  
1982. 2. 8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54g / m<sup>2</sup>)

[별지 제 5호 서식]

투자 및 자금 조달 현황

단위: (내자: 백만원)  
(외자: 천불)

구 분		① 실 적	② 향후 3년간 계획
투 자	③ 시 설		
	④ (건 물) (기 계) (기 타)		
	⑤ 연 구 개 발		
	⑥ 운 전		
	⑦ 기 타		
	⑧ 합 계		
	조 달	⑨ 내 자	
⑩ (자 기 자 금) (국 민 투 자 기 금) (전자공업진흥기금) (일 반 금 용) (사 채) (기 타)			
⑪ 외 자			
⑫ (외 국 인 투 자) (차 관) (외 화 대 부) (기 타)			

2710-16A  
1982. 2. 8.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54g / m<sup>2</sup>)

[별지 제 7호 서식]

기술 도입 현황

① 도입 년 월 일 (향후 3년간 예정포함)	② 도입 분야 ( 품 목 )	③ 도입 내 용	④ 도입 국 및 회 사	⑤ 도입 조 건	⑥ 비 고

2710-18A  
1982. 2. 8.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54g / m<sup>2</sup>)

[별지 제 8 호 서식]

연구 개발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① 착 수 년 월 일 (향후 3 년간 예정포함)	② 연구 개발 분 야	③ 연구 개발 내 용	④ 소 금 요 액	⑤ 종 료 년 월 일	⑥ 비 고

2710-19A  
1982. 2. 8.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54g / m<sup>2</sup>)

[별지 제10호 서식]

〈앞면〉

전자공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			처 리 기 간 2 일
신 고 인	① 성 명 (대표자)		② 주 민 등 록 번 호
	③ 업 체 명		
④ 변 경 사 항			

전자공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
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: (인)

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귀하

- 구 비 서 류
1. 변경사유서 1부
  2. 전자공업등록증
  3.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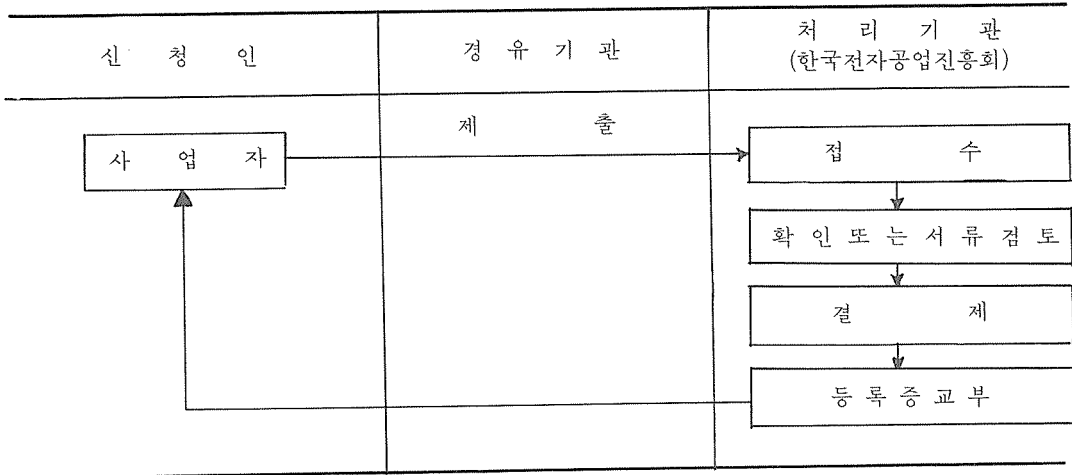
수 수 료  
없 음

2710-11B(1)  
1982. 2. 8.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54g / m<sup>2</sup>)

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<뒷면>



[별지 제11호 서식]

( 기 관 명 )

(전화번호)

분류기호 및

문서번호

수 신

년 월 일

발신

전자공업진흥기금운용상황보고서 ( / 4 분기)

① 기금총액	구 분 분 기	② 대 출	③ 상 환			④ 미대출잔액	
			원	금	이 자		
	⑤ 전 분 기 말 누 계						
	⑥ 금 분 기						
	⑦ 계						
금 분 기 대 출				금 분 기 상 환			
⑧ 일 자	⑨ 사 업 체 명	⑩ 금 액	⑪ 비 고	⑫ 일 자	⑬ 사 업 체 명	⑭ 금 액	⑮ 비 고
계							
⑯ 의 견				⑰ 의 견			

2710-20D  
1982. 2. 8.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54g /㎡)

전	제 호	자
등록증		
1. 사업체명		
2. 주사무소 소재지		
3. 대표자		
4. 자본금		
5. 주생산품		
<p>전자공업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함</p> <p>년    월    일</p>		
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		
공		업



(업 체 명)  
(전화번호)

분류기호 및  
문서번호  
수 신

년 월 일  
발신

전자공업진흥기금사업진도보고서 ( / 4 분기 )

① 기금 총액	구 분 분 기	② 대 출	③ 상 환		④ 미 대 출 잔 액
			원 금	이 자	
	⑤ 전 분 기 말 누 계				
	⑥ 금 분 기				
	⑦ 계				
사 업 진 도					
⑧ 사업 계획					
⑨ 전 분 기 말 진 도					
⑩ 금 분 기 진 도					



(뒷편)

제품별 구분 수출 현황

원재료 및 연료 현황

구분	업체 CODE
Column	④

구분 Col 표시	카드 No.	제품명	단위	세 CODE	품 CODE	수출구명	수출구 CODE	수량	금액(S)	주 원재료명	원재료	단위	구 품	분 의	원 재료 명 (친밀말제외량)	구입량	작 생산량	가 용량	과 보 정 량	발 주 재 고 량	
																					수
	5			⑥	④		⑩	⑫	⑭					1	2						
	5													1	2						
	5													1	2						
	5													1	2						
	5													1	2						
	5									무연탄	901	M/T	1	2							
	5									경유	902	k	1	2							
	5									중유	903	k	1	2							
	5									방카C유	904	k	1	2							
	5									진	905	천 KWH	1	2							

(참고)

본 통계는 경제기획원고시 제19호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본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 허위 불실 기재 또는 기피할 경우는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단 본 통계 자료는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통계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귀 업체의 협조를 바랍니다.

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1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에 필착토록 하여야 하며 1부는 각 업체에 보관함.

※ 각 금액란은 반드시 US\$로 환산(매월 15일 환율 적용) 기입하여야 하며 원화로 기입하면 정정이 불가함

※ 본 조사항은 전산처리되므로 흑색잉크나 볼펜으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함.

※ 모든 숫자는 아란비아숫자(1, 2, 3 등)으로 기입하여야 함.

※ 각 수량과 금액란의 소수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야 함.

※ 월생산이나 제품별 수출현황(뒷면) 등의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조사표를 연결하여 기입하여야 함.

※ 수출말재고의 수량과 금액은 익월 전월말 재고의 수량과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.

※ 전면의 금액수출란의 수량과 금액은 뒷면의 제품별 수출현황의 수량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.

※ 본 조사항 작성시 문의사항은 전화 778-7692~4, 778-0911 통계과로 연락바람.

※ 조사표 제출처: 우편번호 100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10-1 무역회관 1001호 대한전자공업진흥회 통계과